



제 433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 지자체 협의체 추천 위원 참여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14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 지자체 협의체 추천 위원 참여	2
※ 참고자료	7
1.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개요	7
2.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구성 현황	8
3. 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9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3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은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의 조성·활용 방안 등을 심의하는 친수구역 조성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친수구역 조성 등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 지자체 협의체 추천 위원 참여

개정안은 현행법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¹⁾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4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④ · ⑤ (생략)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 ⑤ (현행과 같음)

1)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친수구역은 국가하천의 정비·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 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²⁾을 의미함.

친수구역조성위원회³⁾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친수구역조성사업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하천관리기금⁵⁾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친수구역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심의함.

현행법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위원장 1명(기후부 장관)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2)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법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3) **법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① 친수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4.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법 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으로 구성하고⁶⁾,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지명·임명하도록 하며,
- ② 법정위원회(국가교통위, 교통영향평가심의위, 산지관리위)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및 하천관리·도시계획·환경 전문가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추천한 사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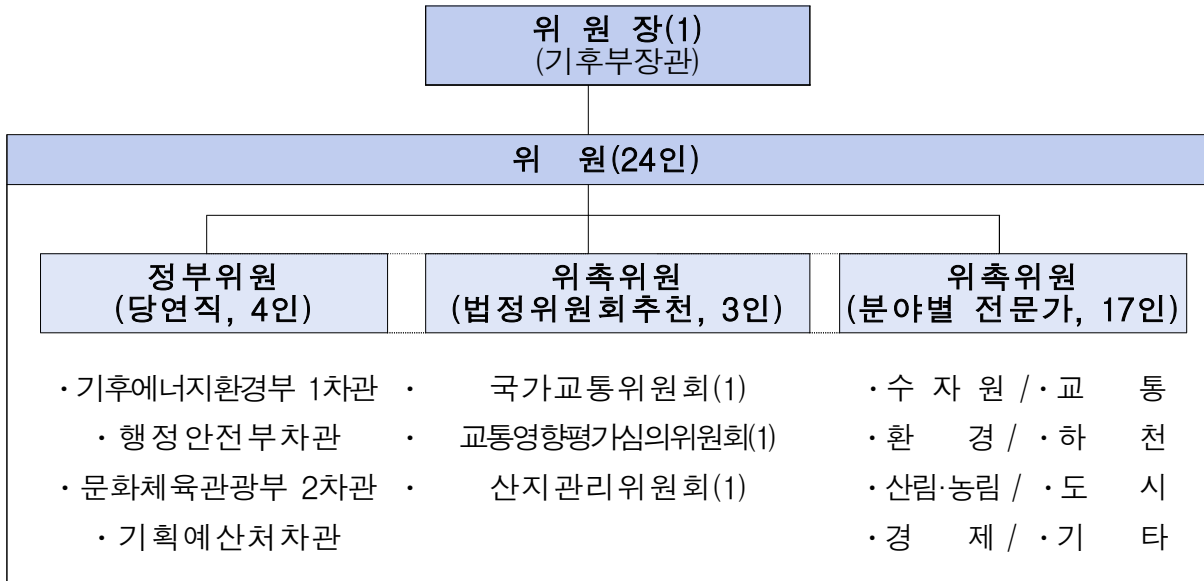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구성 】

위원장(1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위원 (24명)	정부위원 (당연직)	-문체부 차관 중 문체부 장관이 지명 -기후부 차관 중 기후부 장관이 지명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위촉위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하천관리·도시계획 또는 환경 등 전문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정수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제7기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현재(2026. 2월 말 현재) 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5인, 위촉위원 20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6) **법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②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친수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7) **시행령 제2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기획예산처차관
2. 법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 하천관리·도시계획 또는 환경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 제7기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구성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현행법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 심의·의결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2024년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학계 전문가 등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아 지방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큰 102개 정부위원회를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⁸⁾⁹⁾

8) 법제처,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 2025. 12. 16. 참조

9) 이와 관련하여 22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2월 중에 발의되었음(참고자료 3. 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에 관한 개정 현황 참조)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¹⁰⁾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위원회에 포함됨.

친수구역조정위원회는 친수구역 지정·변경, 친수구역조성사업 등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¹¹⁾을 검토·심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관성이 높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추천위원을 위촉위원회에 포함하는 것은 친수구역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어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에서 위촉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협의체가 모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협의체가 친수구역조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할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10)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11) 예를 들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주나 주민들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 포함),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행위가 제한됨.

법 제9조(행위제한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친수구역이 조성되는 국가하천은 광역자치단체 및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어, 기초자치단체보다 대표성을 갖고 유기적인 협력 및 통합·조정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친수구역조성의 주요 정책을 검토·심의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²⁾.

문 의 처
02)6788-5547

1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입법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와 동일한 취지의 타 법 일부 개정법률안(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제2214770호) 발의 사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제3호는 삭제)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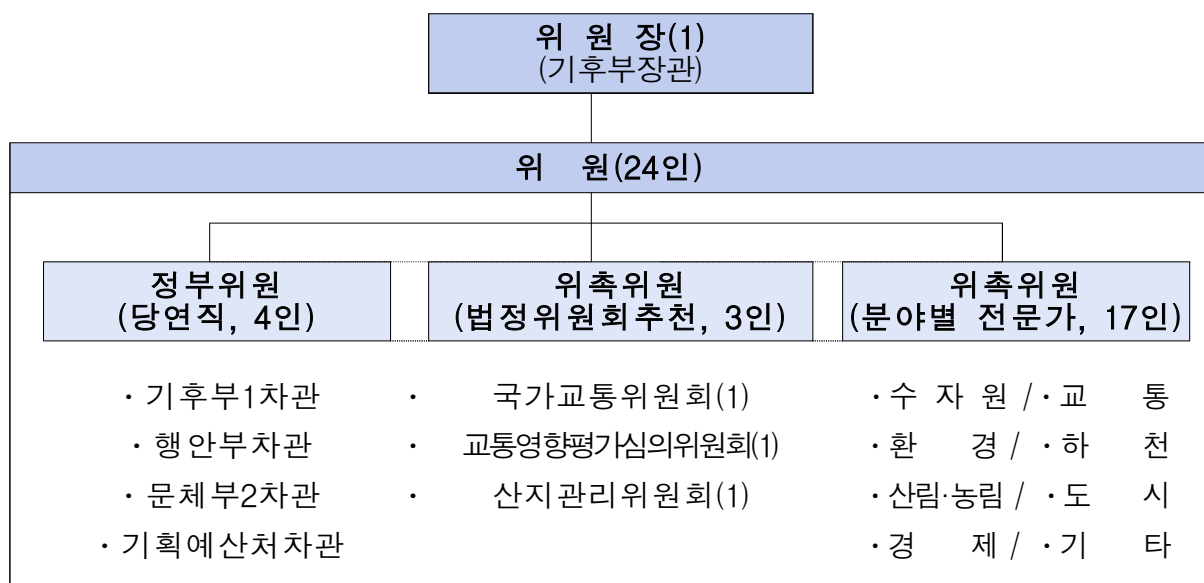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개요

□ 관련 근거 및 기능

- (근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 (기능)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친수구역 활용 등 검토·심의

□ 위원회 구성 * 제7기 위원회 구성('25.5~'27.5)

- 기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인과 위원회 추천위원 3인 및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총 25인 이내로 구성
- ① (당연직 정부위원 5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위원장) 및 1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행안부 차관, 문체부 2차관
- ② (위촉위원, 위원회 추천위원 3인) 국가교통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 ③ (위촉위원, 분야별 위원 17인) 수자원, 환경, 하천, 교통, 산림·농림, 도시,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참고자료 2

제7기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분야	직위 및 경력	성별	지역
정부 위원 (5명)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당연직	
	금한승		•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임기근		• 기획재정부 2차관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현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법정 위원회 추천 위원 (3명)	주정희	교통	• (주)일우이티에스 전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여	수도권
	박병배	산림	• 충남대학교 부교수 (산지관리위원회)	남	비수도권
	박진경	교통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국가교통위원회)	여	비수도권
분야별 민간위원 (17명)	조경진	도시계획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 한국조경학회 회장	남	수도권
	강정은	환경	• 부산대학교 교수 • 국무조정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	여	비수도권
	권현한	하천	• 세종대학교 교수 • 국가수자원위원회 위원	남	수도권
	이승오	하천	• 홍익대학교 교수 • 한국구조물진단관리공학회 이사	남	수도권
	오형나	경제	•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개발연구원 겸임연구위원	여	수도권
	박미연	도시계획	• (주)승화기술 대표이사 • 한양대학교 토목공학 박사	여	수도권
	김미옥	농림	• 한국수생태복원협회 • 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위원	여	수도권
	지민규	환경	•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남	비수도권
	조영철	환경	• 충북대학교 교수	남	비수도권
	최정현	환경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여	수도권
	김구연	환경	• 경남대학교 부교수	여	비수도권
	한건연	수자원	• 경북대학교 방재연구소	남	비수도권
	정관수	수자원	• 충남대학교 교수	남	비수도권
	황규남	수자원	•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남	비수도권
	이주현	수자원	• 중부대학교 교수	남	수도권
	이상은	수자원	• 국토연구원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남	비수도권
	최정윤	도시계획	• 인천대학교 교수	여	수도권

참고자료 3

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에 관한 법률개정 현황¹³⁾

연 번	소관 상임위 (소관 부처)	법률 (대상 조문)	주요 내용	대표 발의의원 (의안번호)
1	기획재정 위원회 (기획재정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제3항)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정태호의원 (2215068)
2	행정안전 위원회 (소방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9조제3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 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건영의원 (2214497)
3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 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항)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준병의원 (2214900)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제4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준병의원 (2214898)
5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준병의원 (2214892)
6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제3항)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준병의원 (2214893)
7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산림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준병의원 (2214897)
8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산업 통상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3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원이의원 (2214427)
9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제3항·제4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원이의원 (2214424)
10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위원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주영의원 (2214770)

13) 자료: 법제처

11	(기후에너지 환경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이학영의원 (2214814)
12		환경보건법 (제10조제3항)	환경보건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박정의원 (2214982)
13		에너지법 (제9조제5항)	에너지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주영의원 (2214769)
14	국토교통 위원회 (국토교통부)	건축기본법 (제13조제3항)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3)
15		국토기본법 (제27조제3항)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0)
1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4)
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6조제3항)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6)
18		물류정책기본법 (제18조제2항)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7)
19		국가통합교통체계 효 율화법 (제107조제3항)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2)
20	성평등가족 위원회 (성평등 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제1항)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한규의원 (2215251)
2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제4항)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한규의원 (2215250)
22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제4항)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한규의원 (2215248)